

	<h1>보 도 자 료</h1>				 
		보도	배포 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담 당 자	서 병 윤 사무관 (02-2100-2991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광 우(02-3145-6771)		박 종 춘 팀장(02-3145-6772) 이 건 필 팀장(02-3145-6773)

제 목 : 해산·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였습니다.

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—

<h3>< 개정 주요 내용 ></h3>
<p>① 저축은행 해산·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과 정관 등 변경시 신고 면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.</p>
<p>②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여신 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일부 증액하였습니다.</p>
<p>③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.</p>

1. 추진 경과

-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('21.7.27. 시행)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·합병 등의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
-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증액 등 규제합리화('20.11월 발표) 내용을 담은 「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'21.7.20.(화)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2. 시행령 개정(안) 주요 내용

① 해산·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(§ 6의4)

- **(현행)** 저축은행의 해산·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(§ 15, § 16 등)에서 정하고 있으나,
 -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이를 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(7.27일 시행)되었습니다.
- **(개선)** 현재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·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,
 -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던 '자본금 감소'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
②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 (§ 7)

- **(현행)** 개별저축은행의 ①정관, ②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수리가 필요하나,
 - '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'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(7.27일 시행)되었습니다.
- **(개선)** ①법령의 제·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, ②착오·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.

③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(§9)

- **(현행)**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 없이 자기자본의 20%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원, 법인 100억원 (개인 8억원)을 한도*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.

* Min [자기자본 20%, 개인 8억원 · 개인사업자 50억원 · 법인 100억원]

- **(개선)** 개인의 신용공여한도가 '16년 증액된 점,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여

-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 공여 한도를 현재 기준대비 20% 증액*하였습니다.
(개인사업자 60억원 · 법인 120억원)

*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'16년 일부 증액(6억원→8억원, 33%증액)되었다는 점을 감안, 이번 개선안은 **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증액**

④ 자산가액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(§11의2)

- **(현행)**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*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
* (주식) 자기자본의 50% 이하, (해외채권) 자기자본의 5% 이하 등

- **(개선)**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*하였습니다.

* 「보험업법」(§107)은 **한도초과 후 1년 이내 처분하도록** 기한을 부여함

3. 향후일정

-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」 개정(안)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(7.27일)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	 FSC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fsc@korea.kr	 1339 발령관리청 콜센터
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